

# 수입협회 주간동향

2018년 12월 24일

◎ KOIMA 주간소식

◎ Weekly review

1.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2.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3.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4.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
  5.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6.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7. 2018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8.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9.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0. 2019년 정부예산
- <첨부파일>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문의 : 한국수입협회 홍보담당 부회장 홍광희 khhong@chin.co.kr

부장 박철홍 parkch@koima.or.kr, 차장 소윤미 ymso@koima.or.kr

※ 수신거부를 원하시는 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입협회(KOIMA) 주간소식

### ○ 제21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12/20)

- 협회 제21대 임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윤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 위촉식 진행



### ○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 내방(12/18)

- 압둘 하킴 아타루드 신임 대사 협회 내방, 양국간 통상협력 확대를 위한 KOIMA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 ◎ Weekly review

### 1.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 □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수요기반 강화

##### ○ 로봇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 시범사업으로 2년간 3개 기초지자체에 로봇 1천대 보급
- 농업용 로봇, 수중로봇, 자율주행 배송로봇 시스템, 태양광 패널 청소용 탈부착형 로봇시스템 등 개발

##### ○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화 및 시설확대 지원

- 로봇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19, 200억원)

#### □ 시장 연계 기술개발 지원

##### ○ 사회적 약자 지원 돌봄·소셜로봇 개발

- 식사보조, 욕창예방, 배변지원 등 로봇 개발

##### ○ 유망 서비스로봇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 물류, 가사지원, 수술 등 유망 서비스로봇 제품·공통 기술 개발 ('20~'26년 4,026억원 투입)

#### □ 시장창출 기반 구축

##### ○ 규제 개선

- 로봇 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의 세부기준 마련

##### ○ 성장 인프라 조성

- 로봇전문기업을 5년 간 100개 선정·육성(연 20개)

자료 : 산업부 보도자료 (2018-12-10)

## 2.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 □ 정부 계획

- 수소차 보급 확대
  - 올해 750여대 → 내년 4천대로 5배 이상 확대
- '22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310개 구축
- 수소차 R&D 및 생산설비 확대 지원
  - '22년까지 누적 1조 5천억원 투자, 3천명 신규 고용
  - '30년까지 누적 7조 6천억원 투자, 5만명 신규 고용

### □ 현대모비스

-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stack 제조기업
  -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으로
  - 수소차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
- 현재 연 3천기 생산능력 보유
  - '22년 연간 4만기로 13배 확대 계획

자료 : 산업부 보도자료 (2018-12-10)

### 3.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되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
- 에너지·통신·IT분야 대·중소기업 5~10개 업체 참여 예정

#### □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 대폭 완화

-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완화
- 등록요건
  - 자본금 및 시설 : 없음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등록절차
  -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
  - 등록 후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음

자료 : 산업부 보도자료 (2018-12-10)

## 4.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

- (창업)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휴·폐업 제외 생존 창업 기업이 '10~'16년간(창업 7년 이내) 총 4,144개
  - (분야별) 의료기기(58.6%), 연구개발업(13.4%), 기능성 화장품(9.6%), 건강기능식품(9.4%), 의약품(6.7%), 보건 의료정보(1.5%), 기타(0.7%)
  - (연도별) ('10) 406개 → ('12) 463개 → ('14) 676개 → ('15) 738개 → ('16) 744개
  
- (고용인원) 창업기업('10~'16)의 '16.12월 기준 총 고용 인원은 3만 472명, '16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은 3,179명
  
- (매출) 창업기업('10~'16)의 '16년도 평균 매출액은 9억 300만 원이고, 창업 5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4억 3100만 원(1년차 기업 1억9400만 원)으로 창업연차가 오래될수록 매출액이 상승하는 추세
  - ('16년 평균매출액) 기능성화장품 26억, 의약품 15억, 건강기능식품 14억, 의료기기 6억, 보건의료정보 4억, 연구개발업 2억원

자료 : 복지부 보도자료 (2018-12-11)

## 5.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 어린이집

- 현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 현황
  - 총 39,181개소(11월말 현재), 이용 아동 1,413,532명
  - 공동주택단지에는 4,208개소(10월말 현재)

### □ 국공립어린이집

-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
- 현황
  - 총 3,531개소(11월 말 현재), 이용률 14.2%
  - 공동주택단지에는 683개소(10월말 현재)로 전체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중 16.2%에 불과
- 법 개정 기대효과
  - 매년 약 300개 추가 설치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촉진

자료 : 복지부 보도자료 (2018-12-10)

## 6.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자료 : 기재부 보도자료 (2018-12-08)

## 7. 2018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4.8→3.5%)은 전기보다 하락하였으며, 총자산증가율(2.1→2.0%)도 전년동기보다 하락

	2017(%)			2018(%)		
	연간	3/4	4/4	1/4	2/4	3/4
매출액증가율	9.9	13.8	5.7	3.4	4.8	3.5
총자산증가율	5.5	2.1	1.3	1.8	1.2	2.0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7.4→7.6%)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6.4→7.2%)은 전년동기보다 상승

	2017(%)			2018(%)		
	연간	3/4	4/4	1/4	2/4	3/4
매출액영업이익률	7.4	7.4	6.1	7.4	7.7	7.6
매출액세전순이익률	7.6	6.4	5.4	8.2	7.7	7.2

- (안정성) 부채비율(83.9→83.0%)과 차입금의존도(20.5→20.3%)는 전기말보다 하락

	2017(%)		2018(%)		
	3/4	4/4	1/4	2/4	3/4
부채비율	84.9	84.7	85.8	83.9	83.0
차입금의존도	22.8	22.5	22.2	20.5	20.3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8-12-13)

## 8.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국내경기 향방 불투명
  -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 역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데 기인
  
- 올 3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2% 수준까지 둔화
  - 설비투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데 기인
  
-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원인
  - 글로벌 경기의 약세 지속
  - 제조업 내수 부진의 지속
  -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
    - 반도체 등 일부 소수 IT 업종은 투자 확대
    - 조선 등 운송장비 업종은 투자 축소
  
- 향후 국내 설비투자의 주요 변수
  - 대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
  - 제조업 내 공급과잉 완화 여부
  - 해외투자 둔화 및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여부
  - 민관 투자계획 효과의 발현 여부 등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09-12)

## 9.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는 2개 안건을 심의
  -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지정 및 실시협약(안)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자지정 및 실시협약(안)

- 신안산선 복선전철
  -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25분(급행기준)으로 크게 단축

사업노선	안산 ~ 여의도(43.6km, 정거장 16, 차량기지 1)		
총사업비	33,465억원('13 불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rs	사업기간	건설5년, 운영40년
기대효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교통편의성 제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 GTX-A가 개통되면 일산과 서울 도심(서울역)이 15분 내로 연결

사업노선	[건설] 파주~삼성 (43.6km, 정거장 5, 차량기지 1) [운영] 파주~삼성~동탄(83.1km)		
총사업비	29,017억원('15 불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5년, 운영30년
기대효과	수도권 서북부·동남부 간 통근시간 획기적 단축		

자료 : 기재부 보도자료 (2018-12-12)

## 10. 2019년 정부예산

- 총지출 469.6조원
  - 정부안 대비 0.9조원 감소
  - 전년대비 6.5% 증가
  
- 총수입 476.1조원
  - 정부안 대비 5.3조원 감소
  - 전년대비 9.5% 증가
  
- 국가채무 740.8조원 (GDP대비 39.4%)
  - 정부안 대비 0.2조원 감소

<2019년 정부예산 개요(조원, %)>

구 분	'18년	'19년		증 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 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총 수 입	447.2	481.3	476.1	-5.3	28.9	6.5
총 지 출	428.8	470.5	469.6	-0.9	40.7	9.5
국가채무	708.2	741.0	740.8	-0.2	32.6	
(GDP대비, %)	(39.5)	(39.4)	(39.4)			

자료 : 기재부 보도자료 (2018-12-08)

#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 1. 소득세법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300~1,800만원*</li> <li>* ① 만기 15년 이상 &amp; (고정금리 &amp; 비거치식) : 1,800만원                          ② 만기 15년 이상 &amp;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 &amp;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li> <li>○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li> <li>○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시가 5억원이하</li> </ul>

< 수정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②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 (소득법 §5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 이상의 자녀</li> <li>○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p>*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p>

< 수정이유 >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③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법 §64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li> <li>· 분리과세시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li> <li>○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li> <li>○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li> <li>*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li> </ul>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li> <li>○ (좌 동)</li> </ul>

< 수정이유 >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 ④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li> </ul> </li> <li>○ (적용제외) '18년 소득분</li> </ul>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li> </ul>

< 수정이유 >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기간 변경(소득법 §129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세율) 현행 25% → 14% ○ (시행기간) '19.1.1.~'20.12.31.	<input type="checkbox"/> 시행기간 변경 ○ (좌 등) ○ (시행기간) '20.1.1.~'20.12.31.

< 수정이유 >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 3·4호)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좌 등) ○ (시행시기) '20.1.1. 이후 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 §118의11)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3억원 이하분: 20% (현행유지) - 3억원 초과분: 20% → 25% ○ (시행시기) '19.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 (좌 등)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 → '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 §165의4①, 법인법 §121의4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 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추 가>	<input type="checkbox"/>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좌 등) ○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수정이유 >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 2. 법인세법

###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의 10% → 30%</li> </ul> <p>*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p>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한도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li> </ul>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li> <li>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li> <li>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li> <li>○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li> </ul> </li> </ul> <p>&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li> </ul>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3. 종합부동산세법

###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조정(중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일반</th> <th>3주택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th> </tr> </thead> <tbody> <tr> <td>3억원 이하</td> <td>0.5%</td> <td>0.6%</td> </tr> <tr> <td>3~6억원</td> <td>0.7%</td> <td>0.9%</td> </tr> <tr> <td>6~12억원</td> <td>1.0%</td> <td>1.3%</td> </tr> <tr> <td>12~50억원</td> <td>1.4%</td> <td>1.8%</td> </tr> <tr> <td>50~94억원</td> <td>2.0%</td> <td>2.5%</td> </tr> <tr> <td>94억원초과</td> <td>2.7%</td> <td>3.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담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150%</li> <li>- (3주택 이상 및 <u>조정대상지역 2주택</u>) 300%</li> </ul> </li> </ul> <p>&lt; 신 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담상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150%</li> <li>- (<u>조정대상지역 2주택</u>) 200%</li> <li>- (3주택 이상) 300%</li> </ul> </li> <li>○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li> </ul>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 4. 부가가치세법

##### ①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 상향(부가법 §4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수산물 등 구입시 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input type="checkbox"/>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좌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td> <td>9/109</td> </tr> <tr> <td>②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td> <td>8/108</td> </tr> <tr> <td>③ 법인</td> <td>6/106</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9/109	②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	8/108	③ 법인	6/10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td> <td>6/106</td> </tr> <tr> <td>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td> <td>4/104</td> </tr> <tr> <td>③ 그 외</td> <td>2/102</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구 분	공제율																
①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9/109																
② 연 매출 4억원 초과 개인	8/108																
③ 법인	6/106																
구 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개인, 중소기업</td> <td>4/104</td> </tr> <tr> <td>② 그 외</td> <td>2/102</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개인, 중소기업	4/104	② 그 외	2/102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td> <td>6/106</td> </tr> <tr> <td>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td> <td>4/104</td> </tr> <tr> <td>③ 그 외</td> <td>2/102</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구 분	공제율																
① 개인, 중소기업	4/104																
② 그 외	2/102																
구 분	공제율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6/106																
② ①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4/104																
③ 그 외	2/102																
- 제조업 - 과세유형장소: 4/104 - 그 외: 2/102	- 제조업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②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19~'20년) ○ (공제율)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추가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700만원 → 1,000만원('19~'21년)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기본</th> <th>우대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td> <td>2.0%</td> <td>2.6%</td> </tr> <tr> <td>기타 사업자</td> <td>1.0%</td> <td>1.3%</td> </tr> </tbody> </table>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좌 동)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0.12.31.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 자영업자 지원

##### ③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 §53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 게임·음성·동영상 파일·전자 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추 가>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추 가>	○ 중개용역

< 수정이유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4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법 §72①)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 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세액배분 - 부가가치세 : 89% - 지방소비세 : 11%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확대 (+4%p) ○ (좌 동) - 부가가치세 : 85% - 지방소비세 : 15%

< 수정이유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중소 3% → 7% 중견 1~2% → 3% ○ (적용기한) '21.12.31.	<input type="checkbox"/>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중소 3% → 10% 중견 1~2% → 5% ○ (좌 동)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 §25)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table border="1" data-bbox="1288 874 1713 1125"> <thead> <tr> <th>공제시설</th> <th>공제율 (대·중·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설비 등</td> <td>1·3·7 → 1·3·10</td> </tr> <tr> <td>환경보전시설</td> <td>1·3·10</td> </tr> <tr> <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7·7·10 → 1·3·10</td> </tr> <tr> <td>R&amp;D설비</td> <td>1·3·6 → 1·3·7</td> </tr> <tr> <td>생산성향상시설</td> <td>1·3·7</td> </tr> <tr> <td>에너지절약시설</td> <td>1·3·6 → 1·3·7</td> </tr> <tr> <td>직장어린이집</td> <td>10·10·10</td> </tr> </tbody> </table> ○ (적용기한) <table border="1" data-bbox="1288 1177 1713 1401"> <thead> <tr> <th>공제시설</th> <th>적용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설비 등</td> <td>'19.12.31.</td> </tr> <tr> <td>환경보전시설</td> <td>'18.12.31.→'21.12.31.</td> </tr> <tr> <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18.12.31.→'21.12.31.</td> </tr> <tr> <td>R&amp;D설비</td> <td>'18.12.31.→'21.12.31.</td> </tr> <tr> <td>생산성향상시설</td> <td>'19.12.31.</td> </tr> <tr> <td>에너지절약시설</td> <td>'18.12.31.→'21.12.31.</td> </tr> </tbody> </table>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중소,%)	안전설비 등	1·3·7 → 1·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 → 1·3·10	R&D설비	1·3·6 → 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 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21.12.31.	R&D설비	'18.12.31.→'21.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21.12.31.	<input type="checkbox"/>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율 인상) <table border="1" data-bbox="1765 874 2190 1125"> <thead> <tr> <th>공제시설</th> <th>공제율 (대·중·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설비 등</td> <td>1·5·10</td> </tr> <tr> <td>환경보전시설</td> <td>3·5·10</td> </tr> <tr> <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3·5·10</td> </tr> <tr> <td>R&amp;D설비</td> <td rowspan="4">(좌 동)</td> </tr> <tr> <td>생산성향상시설</td> </tr> <tr> <td>에너지절약시설</td> </tr> <tr> <td>직장어린이집</td> </tr> </tbody> </table> ○ (좌 동)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3·5·10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중소,%)																																											
안전설비 등	1·3·7 → 1·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 → 1·3·10																																											
R&D설비	1·3·6 → 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 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21.12.31.																																											
R&D설비	'18.12.31.→'21.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21.12.31.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3·5·10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 수정이유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③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조의7)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 신설 >	<input type="checkbox"/>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li> <li>○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li> <li>○ (공제율) 2% + 최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1/5</li> </ul> </li> <li>○ (적용기한) '20.12.31</li> </ul>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 §2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li> </ul> </li> <li>○ (대상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li> </ul> </li> <li>○ (취득기간) '18.7.1. ~ '19.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 자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li> <li>-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li> </ul> </li> <li>○ (좌 동)</li> </ul>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⑤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 §29의7)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 rowspan="2">청년 정규직</td> <td>일반</td> <td>1,000</td> <td>1,100</td> <td>700</td> <td>300</td> </tr> <tr> <td>청년친화기업</td> <td>1,500</td> <td>1,600</td> <td>1,200</td> <td>800</td> </tr> </tbody> </table> </li> <li>○ (공제기간) 1년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1년 → 2년,</li> <li>중소·중견 2년 → 3년</li> </ul> </li> <li>○ (적용기한) '21.12.31.</li> </ul>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input type="checkbox"/>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 정규직</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일반	1,000	1,100	700	300																																				
	청년친화기업	1,500	1,600	1,200	800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1,100	1,200	800	400																																					

< 수정이유 >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⑥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 §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li> <li>○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li> <li>○ (적용기한) '21.12.31.</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li> <li>○ (좌 동)</li> <li>○ (적용기한) '19.12.31</li> </ul>

< 수정이유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 금액 제외</li> <li>○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업(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원</td> </tr> <tr> <td>4천만원~1억원</td> <td>300만원</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li> <li>○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li> <li>× <math>(1 - \frac{\text{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math></li> </ul> </li> <li>○ (적용대상) 기존·신규가입자</li> </ul>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적용대상) 신규 가입자</li> </ul>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수정이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감안

< 시행시기 >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5, §89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율 및 적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회원: 비과세·분리과세 3년 연장</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소득발생 기간</th> <th>'21.12.31. 까지</th> <th>'22.1.1. ~ '22.12.31.</th> <th>'23.1.1. 부터</th> </tr> </thead> <tbody> <tr> <td>감면 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조합원: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소득발생 기간</th> <th>'18.12.31. 까지</th> <th>'19.1.1. ~ '19.12.31.</th> <th>'20.1.1. 부터</th> </tr> </thead> <tbody> <tr> <td>감면 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소득발생 기간	'21.12.31. 까지	'22.1.1. ~ '22.12.31.	'23.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회원, 준조합원: 비과세·분리과세 2년 연장</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소득발생 기간</th> <th>'20.12.31. 까지</th> <th>'21.1.1. ~ '21.12.31.</th> <th>'22.1.1. 부터</th> </tr> </thead> <tbody> <tr> <td>감면 내용</td> <td>비과세</td> <td>5% 분리과세</td> <td>9% 분리과세</td> </tr> </tbody> </table>	소득발생 기간	'20.12.31. 까지	'21.1.1. ~ '21.12.31.	'2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21.12.31. 까지	'22.1.1. ~ '22.12.31.	'23.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18.12.31. 까지	'19.1.1. ~ '19.12.31.	'2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소득발생 기간	'20.12.31. 까지	'21.1.1. ~ '21.12.31.	'2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감안

9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 (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1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10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사업장 신설 ○ (대상)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 ○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 '21.12.31.	<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 감면확대 ○ (좌 동) ○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좌 동)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

1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21.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0.12.31.

< 수정이유 > 적용기한의 합리적 조정

1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조특법 §106 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전기버스 <추 가> ○ (적용기한) '20.12.31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에 수소버스 추가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버스 ○ (좌 동)

< 수정이유 >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 (조특법 §118조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 ○ (감면대상) 중소·중견기업  ○ (감면한도) ① 완전복귀 : 한도 4억원 ② 부분복귀 : 한도 2억원  ○ (적용기한) '21.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확대, 감면한도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 (감면한도) ] - 한도 폐지  ○ (좌 동)

< 수정이유 >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행시기 > '19.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4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계획에 따른 창업기업 등 추가(조특법 §121조의17 등)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 ○ (적용대상)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 100% + 2년 50%* *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 (적용기한) '21.12.31.	<input type="checkbox"/> 낙후지역 감면제도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미군공여구역법」상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과 사업시행자 추가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19.1.1. 이후 창업·사업장신설·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1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97의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8년 임대시: 50% → 70%  ○ 10년 임대시: 70% → 삭제	<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 8년 임대시: 50%  ○ 10년 임대시: 70%

< 수정이유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1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b>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b></li> <li>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b>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b></li> </ul> </li> <li>*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li> <li>**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주택자) 기본세율(6~42%) + 10%p</li> </ul> </li> <li>②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1부터 3~15년 이상 보유시 6~30% 공제를 축진</li> </ul> </li> </ul> </li> <li>○ 사후관리: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미보유 또는 최초 보유기간 3년 중 2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li> <li>○ 적용기한 : '20.12.31.까지 양도</li> </ul>

< 수정이유 > 수도권 거주자의 농어촌 및 소규모 지방도시 이동을 촉진  
 < 시행시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보완(국기법 §8⑤·§12②)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구속된 자 등에 대한 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li> <li>○ 수감자 등에게 직접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 발생</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 수정이유 > 적용 대상 명확화

2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외거래 : 국제거래* + 거주자간 국외 자산·용역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li> </ul> </li> <li>○ 부과제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기타 부정행위 : 15년</li> <li>- 무신고 : 7년 → 10년</li> <li>- 과소신고 : 5년 → 10년</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폭 축소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신고 : 5년 → 7년</li> </ul>

< 수정이유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③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 §81의5②)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삭 제 >

- < 수정이유 >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 부대의견 > 정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④ 불복청구서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 ○ 출석하여 구술 → 서면제출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보정방법 선택 가능 ○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제출

-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7. 관세법

①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관세법 §89, 부칙§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 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적용기간 및 감면율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연장 및 감면을 확대 ○ (좌 동)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WI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품목(3년 유예)																				
<table border="1"> <thead> <tr> <th>'18년</th> <th>'19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80%</td> <td>60%</td> <td>40%</td> <td>20%</td> </tr> </tbody> </table>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0%	80%	60%	40%	20%	<table border="1"> <thead> <tr> <th>'19.5.1 ~'21.12.31</th> <th>'22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80%</td> <td>60%</td> <td>40%</td> <td>20%</td> </tr> </tbody> </table>	'19.5.1 ~'21.12.31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0%	80%	60%	40%	20%																	
'19.5.1 ~'21.12.31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 그 이외의 품목																				
	<table border="1"> <thead> <tr> <th>'19.5.1 ~'19.12.31</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h>'23년</th> <th>'24년</th> <th>'25년</th> </tr> </thead> <tbody> <tr>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d>50%</td> <td>40%</td> <td>20%</td> </tr> </tbody> </table>	'19.5.1 ~'19.12.31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0%	80%	70%	60%	50%	40%	20%						
'19.5.1 ~'19.12.31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0%	80%	70%	60%	50%	40%	20%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 수정이유 >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합리적 지원

- < 시행시기 > '19.5.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9.1.1.부터 '19.4.30.까지 수입신고 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

2 입국장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 도입

(관세법 §176조의2①, §196조②, 조특법 §121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 마련 ○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 판매가능 * 공항 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 판매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 기재부령으로 규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입국장 면세점 특허 제한 ○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부여

< 수정이유 >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3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관세법 §116조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지급 받을 경우 ○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출대상 축소 및 정비 ○ (좌 동)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17년)

< 수정이유 > 출입국절차 간소화 및 제도변경 반영

8. 개별소비세법

1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소법 §1②2가목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대상 ○ 보석 중 - 공업용 다이아몬드 - 원석(原石)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제외 대상에 나석(裸石)을 추가  (좌 동)  - 나석(裸石)

< 수정이유 >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제조장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인지세법

1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인지법 §3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의 범위 ○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 ○ (시행시기) '19.7.1. 이후 발행분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상품권 과세기준금액 상향 - 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 (시행시기) '20.1.1. 이후 발행분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

## 10. 세무사법

### ①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일 명시(세무사법 §5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li> <l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li> </ul>

< 수정이유 > 수험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법률에 명시

### ② 세무사등록부 등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재(세무사법 §6①, §17⑥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input type="checkbox"/> 세무사등록부 법정기재 사항으로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li> </ul> <input type="checkbox"/>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록·관리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 ③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신설(세무사법 §14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리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 및 수입액·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록</li> </ul> </li> <li>○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li> </ul>

< 수정이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시행시기 > '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 ④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 신설(세무사법 §14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입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하여서는 아니됨</li> </ul>

< 수정이유 > 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